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927

발의연월일: 2020. 8. 13.

발 의 자:최인호·박상혁·박재호

강선우 • 전재수 • 김병욱

송옥주 · 이학영 · 이탄희

민홍철 · 서삼석 의원

(11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 음.

그런데 채무보증의 범위가 해운항만사업자가 '자산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한정됨에 따라 업계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자산관리 대상이 선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해외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하게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해운항만사업자가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등이 가능하도록 공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도 공사의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공사의 업무를 국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 제4호 및 제11조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차입"을 "차입(회사채 발행을 포함한다)"으로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 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2의3. 경제상황 등으로 해운항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및 그 수탁
-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제11조(업무) ①
호의 업무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	2
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을 위	
하여 해운항만사업자가 <u>차입</u>	<u>차입</u>
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회사채 발행을 포함한다)
<u><신 설></u>	2의2. 해운항만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
	런 자산을 담보로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u><신 설></u>	2의3. 경제상황 등으로 해운항
	만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
	는 경우로서 해운항만사업자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부터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u>채무보증</u>
<u><신 설></u>	2의4. 해운항만사업자가 체결하
	는 화물운송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 3. (생략)
- 4. 선박의 취득·관리 및 처분의 수탁
- 5. ~ 12. (생 략)
- ② (생 략)
- <신 설>
- ③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

 만업 관련 자산의 취득·관리·

 처분 및 그 수탁
- 5. ~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④ (현행 제3항과 같음)